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공고 제2026 - 18호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입법예고

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지방공무원 여비 조례」를 일부 개정함에 있어 그 입법취지와 주요내용을 구민에게 널리 알려 의견을 구하고자 「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 회의규칙」 제13조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입법예고합니다.

2026년 10월 2일

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의장

1. 제안이유

국민권익위원회의 「69개 기초 자치구 및 지방의회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」에 따라 상시출장 여비 지급대상을 조례에 구체적으로 명시하여 자의적 해석에 따른 대상자 지정이 이루어지지 않도록 하고, 여비 부정 수령 시 가산징수 금액을 명확히 하여 여비 지급의 투명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고자 함.

2. 주요내용

가. 월액여비 지급기준을 별표로 정하도록 함.(안 제2조)

나. 여비 부정수령액 환수금액을 '해당액'으로 개정함.(안 제4조제3항)

3. 의견제출

이 조례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법인·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10월 8일까지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작성하여 서울특별시 강동구의회[참조 : 의회사무국장, 서울특별시 강동구 성내로 55, 전화 : 02)3425-7388, FAX : 02)3425-7292, E-mail : tnk10@gangdong.go.kr]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가. 입법예고 사항에 대한 의견(찬·반 여부 및 그 사유)

나. 성명(법인·단체의 경우에는 법인·단체명과 그 대표자 성명), 주소 및 전화번호

다. 기타 참고사항